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8일,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2.27.)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3.6.)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도읍의원)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현행법 제14조~제16조)를 도입(2019. 8. 20. 제정) 및 시행(2020. 8. 21.)하고 있음.

생화 소비 촉진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부 저가 화환 제조업체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 회피를 위해 생화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현재 침체된 국내 화훼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 제3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에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조 제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취지가 국내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조제2항의 ‘생화’를 ‘국내산 화훼’로 용어 변경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 현행법의 화훼 정의를 고려하여 “생화”를 “화훼”로 수정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국가 등의 생화 사용 노력 의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화훼 정의를 고려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국가 등의 생화 사용 노력 의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화훼 정의를 고려하여 “생화”를 “화훼”로 수정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3조).
- 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을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을 “공포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조(국가 및 <u>지방자치단체의</u>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u>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u> 조성을 위하여 <u>생활</u> 화를 <u>사용하도록</u>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u>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u>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가 및 <u>지방자치단체 등의</u>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u>화</u> <u>훼구매 확대 등</u> <u>화훼의 이용 촉진</u> <u>을 위하여</u> ----- ----- -----. 부 칙 ----- <u>공포한</u>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공공기관</u> ----- ----- ----- ----- ----- ----- -----

현행	개정안
에 따라야 한다. ③ ~⑤ (생략)	-----. ③ ~⑤ (현행과 같음)